남원시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선람	기관의 장

www.namwon.go.kr

제26호 2024. 5. 3(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4-83호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1
○ 남원시 고시 제2024-84호 남원시 도시관리계획(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3
○ 남원시 고시 제2024-86호 남원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고시--------------------------9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4-967호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1

회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고시 제2024-8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92(2024.04.05.)로 결정(변경) 고시된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3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기정	5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3-4호선변 (충정로)	18,900	1,575	12	전북고시 제1997-168호 (1997.5.13.)
변경	5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3-4호선변 (충정로)	15,000	1,575	12	전북고시 제1997-168호 (1997.5.13.)
기정	10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1-10호선변	34,920	2,910	12	전북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변경	10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 1-10호선변	32,441	2,910	12	전북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2) 용도지구(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지구	· 면적변경 - 18,900㎡ → 15,000㎡ (감 3,900㎡)	· 근린공원 11 호의 면적증가 및 선형 변경에 의해 경관지구 변경
10	경관지구	· 면적변경 - 34,920㎡ → 32,441㎡ (감 2,479㎡)	· 근린공원 11 호의 면적증가 및 선형 변경에 의해 경관지구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중앙공원 (11호)	만인공원	근린공원	동충동 197-1번지 일원	51,300	증)31,335	82,635	전북고시 제2000-415호 (2000.12.29.)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만인공원	· 시설명 : 중앙공원(11호) → 만인공원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 - 면 적 : 51,300㎡ → 82,635㎡ (증 31,335㎡)	· 도시관리계획으로 원성 북문을 연계한 생활권공원을 확장·조성하여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기 결정되어 있는 공원에 만인의총과 남 휴식공간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2. 관계 도서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4-8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 고시된 향교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향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결정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4년 5월 3일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향교 공원	근린 공원	남원시 향교동 산19번지 일원	486,786	-	486,786	건설부 고시 제520호 (1963.08.26.)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시설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	시설면적(㎡)									비고
					동수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86,786	-	486,786	100.0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시설합계	84,342	감)3,323	81,019	16.6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도로 및 광장	31,723	감)1,970	29,753	6.1	-	-	-	-	-	-	-	-	-	
조경시설	26,651	-	26,651	5.5	-	-	-	-	-	-	-	-	-	
운동시설	3,594	-	3,594	0.7	-	-	-	-	-	-	-	-	-	
교양시설	13,656	감)148	13,508	2.8	5	-	5	801	-	801	801	-	801	
편익시설	6,192	감)1,205	4,987	1.0	3	-	3	280	-	280	280	-	280	
휴양시설	2,307	-	2,307	0.5	1	-	1	87	-	87	87	-	87	
관리시설	219	-	219	0.0	2	-	2	219	-	219	219	-	219	
녹지	402,444	증)3,323	405,767	83.4	-	-	-	-	-	-	-	-	-	

3.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변 경)

가.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동수			건물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86,786	-	486,786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공원시설합계				84,342	감)3,323	81,019	11	-	11	1,387	-	1,387	1,387	-	1,387	
도로 및 광장	기정	변경	소계	31,723	감)1,970	29,753	-	-	-	-	-	-	-	-	-	
	1-1	1-1	보행자도로	61	-	61	-	-	-	-	-	-	-	-	-	
	1-2	1-2	보행자도로	247	-	247	-	-	-	-	-	-	-	-	-	
	1-3	1-3	보행자도로	275	-	275	-	-	-	-	-	-	-	-	-	
	1-4	1-4	보행자도로	64	-	64	-	-	-	-	-	-	-	-	-	
	1-5	1-5	보행자도로	920	-	920	-	-	-	-	-	-	-	-	-	
	1-6	1-6	보행자도로	608	-	608	-	-	-	-	-	-	-	-	-	
	1-7	1-7	보행자도로	289	-	289	-	-	-	-	-	-	-	-	-	
	1-8	1-8	보행자도로	231	-	231	-	-	-	-	-	-	-	-	-	
	1-9	1-9	보행자도로	314	-	314	-	-	-	-	-	-	-	-	-	
	1-10	1-10	보행자도로	197	-	197	-	-	-	-	-	-	-	-	-	
	1-11	1-11	보행자도로	1,143	-	1,143	-	-	-	-	-	-	-	-	-	
	2-1	2-1	산책로	2,689	-	2,689	-	-	-	-	-	-	-	-	-	
	2-2	2-2	산책로	1,861	-	1,861	-	-	-	-	-	-	-	-	-	
	2-3	2-3	산책로	1,278	-	1,278	-	-	-	-	-	-	-	-	-	
	2-4	2-4	산책로	933	-	933	-	-	-	-	-	-	-	-	-	
	2-5	2-5	산책로	187	-	187	-	-	-	-	-	-	-	-	-	
	2-6	2-6	산책로	690	감)488	202	-	-	-	-	-	-	-	-	-	
	2-7	2-7	산책로	575	증)560	1,135	-	-	-	-	-	-	-	-	-	
	2-8	2-8	산책로	948	감)126	822	-	-	-	-	-	-	-	-	-	
	2-9	2-9	산책로	2,203	-	2,203	-	-	-	-	-	-	-	-	-	
	2-10	2-10	진입광장	3,545	-	3,545	-	-	-	-	-	-	-	-	-	
	2-11	2-11	중앙광장	8,069	-	8,069	-	-	-	-	-	-	-	-	-	
	2-12	2-12	쉼터광장	4,396	감)1,916	2,480	-	-	-	-	-	-	-	-	-	
소계				26,651	-	26,651	-	-	-	-	-	-	-	-	-	
조경시설	3-1	3-1	음수대	111	-	111	-	-	-	-	-	-	-	-	-	
	3-2	3-2	음수대	229	-	229	-	-	-	-	-	-	-	-	-	
	3-3	3-3	잔디밭	15,699	-	15,699	-	-	-	-	-	-	-	-	-	
	3-4	3-4	잔디밭	2,175	-	2,175	-	-	-	-	-	-	-	-	-	
	3-5	3-5	잔디밭	4,307	-	4,307	-	-	-	-	-	-	-	-	-	
	3-6	3-6	잔디밭	461	-	461	-	-	-	-	-	-	-	-	-	
	3-7	3-7	연못	2,325	-	2,325	-	-	-	-	-	-	-	-	-	
	3-8	3-8	연못	1,344	-	1,344	-	-	-	-	-	-	-	-	-	
소계				3,594	-	3,594	-	-	-	-	-	-	-	-	-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동수			건물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운동시설	4-1	4-1	운동시설	1,753	-	1,753	-	-	-	-	-	-	-	-	-	
	4-2	4-2	운동시설	612	-	612	-	-	-	-	-	-	-	-	-	
	4-3	4-3	운동시설	1,229	-	1,229	-	-	-	-	-	-	-	-	-	
소계				13,656	감)148	13,508	5	-	5	801	-	801	801	-	801	
교양시설	5-1	5-1	탑	146	-	146	-	-	-	-	-	-	-	-	-	
	5-2	5-2	탑	48	-	48	-	-	-	-	-	-	-	-	-	
	5-3	5-3	탑	35	-	35	-	-	-	-	-	-	-	-	-	
	5-4	5-4	순의 탑	465	-	465	-	-	-	-	-	-	-	-	-	
	5-5	5-5	중수비	69	-	69	-	-	-	-	-	-	-	-	-	
	5-6	5-6	역사유물기념관	290	-	290	1	-	1	290	-	290	290	-	290	
	5-7	5-7	총의문	93	-	93	1	-	1	93	-	93	93	-	93	
	5-8	5-8	성인문	68	-	68	1	-	1	68	-	68	68	-	68	
	5-9	5-9	충렬사	211	-	211	1	-	1	211	-	211	211	-	211	
	5-10	5-10	만인의 총	71	-	71	-	-	-	-	-	-	-	-	-	
	5-11	5-11	만인의 총 정문	139	-	139	1	-	1	139	-	139	139	-	139	
	5-12	5-12	탄소저감식물존	12,021	감)148	11,873	-	-	-	-	-	-	-	-	-	
소계				6,192	감)1,205	4,987	3	-	3	280	-	280	280	-	280	
편익시설	6-1	6-1	주차장	3,465	-	3,465	-	-	-	-	-	-	-	-	-	
	6-2	6-2	주차장	1,066	감)883	183	-	-	-	-	-	-	-	-	-	
	6-3	-	주차장	777	감)777	-	-	-	-	-	-	-	-	-	-	폐지
	6-4	6-3	화장실	92	-	92	1	-	1	92	-	92	92	-	92	
	6-5	6-4	화장실	166	-	166	1	-	1	166	-	166	166	-	166	
	6-6	6-5	전망대	626	-	626	1	-	1	22	-	22	22	-	22	
	-	6-6	녹지연결로	-	증)455	455	-	-	-	-	-	-	-	-	-	신설
소계				2,307	-	2,307	1	-	1	87	-	87	87	-	87	
휴양시설	7-1	7-1	팔각정	87	-	87	1	-	1	87	-	87	87	-	87	
	7-2	7-2	숲속쉼터	2,220	-	2,220	-	-	-	-	-	-	-	-	-	
공원관리시설	8-1	8-1	공원관리사무실	219	-	219	2	-	2	219	-	219	219	-	219	
기타시설	녹지			402,444	증)3,323	405,767	-	-	-	-	-	-	-	-	-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안)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명 칭 :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49,8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비 : 6,000백만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합 계				146,924	49,870					
1	용정동	269	전	586	586	김종희	남원시 요천로 1300, 103동 1404호			
2	용정동	269-2	하	415	69	남원시				
3	용정동	271	하	2,014	178	남원시				
4	용정동	271-1	전	744	744	김제곤	남원시 향교동 48			
5	용정동	271-6	하	31	31	남원시				
6	용정동	271-7	전	289	289	남원시				
7	용정동	273-1	도	56	56	국(건설교통부)				
8	용정동	273-2	전	72	72	박근규	남원시 동림로 129, 8동 701호			
9	용정동	273-3	전	565	565	남원시				
10	용정동	273-4	전	122	122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1	용정동	273-5	전	172	172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2	용정동	273-6	전	192	192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3	용정동	273-7	전	47	47	남원시				
14	용정동	273-8	과	801	801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5	용정동	273-9	임	188	188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6	용정동	273-10	임	254	254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7	용정동	273-11	과	288	288	서경자	남원시 동림로 32			
18	용정동	274-2	전	308	308	박근규	남원시 동림로 219, 8동 701호			
19	용정동	274-3	전	49	49	남원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20	용정동	275-1	도	684	684	남원시				
21	용정동	276	전	1,150	1,150	김익곤	남원군 남원읍 향교리 464			
22	용정동	277	전	757	757	영천이씨금리종중	남원시 금동 131			
23	용정동	278-1	전	627	627	남원시				
24	용정동	278-3	도	461	461	남원시				
25	용정동	279-1	전	373	373	남원시				
26	용정동	279-3	전	419	419	남원시				
27	용정동	280-2	전	208	208	남원시				
28	용정동	281	전	1,342	1,342	서종오	남원시 동림로 129, 1동 1003호			
29	용정동	281-1	전	221	221	남원시				
30	용정동	281-2	전	592	592	남원시				
31	용정동	281-3	전	2,209	2,209	남원시				
32	용정동	281-10	전	1,114	1,114	남원시				
33	용정동	760	도	35,458	3,882	국(건설부)				
34	용정동	764	구	357	202	국(농림부)				
35	용정동	산113	임	28,879	5,848	영천이씨금리종중	남원시 금동 131			
36	용정동	산114-2	임	92	92	남원시				
37	용정동	산114-3	임	4	4	남원시				
38	용정동	산114-4	임	7	7	남원시				
39	용정동	산115-4	임	793	793	남원시				
40	용정동	산116-1	임	2,730	2,671	남원시				
41	용정동	산116-2	도	397	370	남원시				
42	용정동	산116-5	임	99	99	남원시				
43	용정동	산116-6	임	543	315	남원시				
44	용정동	산117-1	임	16,562	9,967	남원시				
45	용정동	산117-4	도	99	99	남원시				
46	용정동	산117-6	임	496	496	남원시				
47	용정동	산117-7	임	7,438	7,438	남원시				
48	향교동	501-1	전	109	101	남원시				
49	향교동	501-2	도	60	60	국(건설부)				
50	향교동	502	임	214	8	남원시				
51	향교동	503	도	1,478	268	국(건설부)				
52	향교동	503-3	임	26	26	남원시				
53	향교동	525-1	도	377	132	남원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54	향교동	525-2	전	307	193	남원시				
55	향교동	1007-1	도	2,945	235	국(건설부)				
56	향교동	1007-2	전	224	217	남원시				
57	향교동	1007-6	도	82	82	국(기획재정부)				
58	향교동	산15-8	도	99	95	남원시				
59	향교동	산15-1	임	29,699	1,002	전라북도 향교재단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			

남원시 고시 제2024-86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인 **『남원의료원 그린리모델링 조성사업(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4년 5월 3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명 칭 : 남원의료원 그린리모델링 조성사업(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고죽동 200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98,562㎡(장례식장 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34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죽동 200번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설계인가시 ~ 사용승인시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9필지		230,739	98,562					
1	남원시 고죽	200	대	35,015	33,012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2	남원시 고죽	200-5	수	23	23	국(건교부)				
3	남원시 고죽	299-1	임	815	148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4	남원시 고죽	623-1	천	129,084	12	국(건교부)				
5	남원시 월락	248-2	대	571	571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6	남원시 월락	252	대	35,669	35,669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7	남원시 월락	252-1	대	28,272	28,272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8	남원시 월락	252-2	대	218	218	남원의료원	고죽동 200			
9	남원시 월락	622-43	구	1,072	637	국(농림부)				

남원시 공고 제2024 - 967호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29. ~ 2024. 5. 20.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남원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남원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시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사업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

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3.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 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